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54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543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1108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장우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이동준

변론 종결2024. 4. 18.

판결 선고2024. 5. 9.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110897 판결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3행의 "금전소비대차 상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약서'라 한다)"를, "금전소비대차 상환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상환계약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0. 6. 중순경 피고들로부터 '해외 덴탈마스크 주문량이 많으니 현금 및 마스크 생산 설비를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업회사에 1,623,473,082원 상당의 현금 및 마스크 생산 설비를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마스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해외 오더 등 거래처의 주문량, 수익성 등에 관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투자한 위 현금 및 마스크 생산 설비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623,473,082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선택적으로, 당사자가 2020. 11. 15. 이 사건 상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을 위하여 출연하였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동업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산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환계약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 의무의 이행 또는 금전소비대차상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의무 이행으로 원고에게 1,39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17행의 "피고들은 이 사건 상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환계약에 기한 약정금 내지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를 "피고들은 이 사건 상환계약서(갑 제3호증)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상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환계약에 기한 약정금 내지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환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들이 위 계약서상의 이 사건 동업회사의 금전상환의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이 법원에 금전소비대차 상환계약서(갑 제40호증)를 새로이 증거로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금전소비대차 상환계약서(갑 제40호증)의 부동문자 내용뿐만 아니라 인영의 날인 방향 및 서명 위치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상환계약서(갑 제3호증)와 동일해 보이나 금전소비대차 상환계약서(갑 제40호증)에는 "별첨; (주) E(을)은 대표이사(병) B와 이사(정) C과 함께 채권자(갑)인 A에게 반환할 금전대차 상환계약서에 대한 변제 의무를 연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가필되어 있는바, 위 가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다거나 기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